

[노동법 개악 못막으면 끝장난다!] ②

다시 노조파괴가 판친다!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 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 ②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 ③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엄격하게!
- ④ 산별노조 간부 사업장 활동 금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하지 말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을 빌미로 노조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ILO 회원국 191개 중 결사의 자유 87호, 98호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20개에 불과하다. 이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면서 노조법을 완전히 사용자에게 넘겨주

겠다는 말도 안되는 행각을 벌이고 있다. ILO 핵심협약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이니, 사용자측에 유리한 것도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중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형사 처벌하지 말자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지금도 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고, 제대로 처벌도 안되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는 사업주의 노조파괴를 모두 허용하자는 말이다.

다시 노조파괴가 판치는 세상이 온다!

유성기업, 보쉬전장, 컨티넨탈 등 노조파괴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온 사업장들이 아직도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도 이렇게 노조파괴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운 동지들 덕분에 노조파괴의 흐름이 차단될 수 있었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살았고, 노조파괴를 자문해준 창조컨설팅 노무사들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의 노조법만으로도 사용자들은 얼마든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를 수 있고, 이를 이용해서 노조파괴를 일삼았다. 그만큼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관대했다. 그런데 이제 아예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지 말자는 내용의 노조법 개악안이 경사노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사업주들의 노조파괴 범죄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 조항은 더 강화해서 적용해야 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주는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다. 법에서 처벌 조항을 없앤다면, 어느 사업주가 법을 지키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나? 처벌하지 않겠다는 말은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과 똑같다. 지부는 복수노조_노조파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법 개정 투쟁을 벌여왔다. 경사노위에서 논의되는 노조법 개악이 실현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된다. 복수노조_노조파괴 사업장의 완전한 노조할 권리를 위해서 노조법 개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